#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

**제29조 (서비스 이용계약)**
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**제30조(계약목적)**
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

**제31조 (서비스의 내용)**
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.

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

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

③ 취미, 오락,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

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
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

**제32조 (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)**
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과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.

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적용

**제33조 ( 서비스 제공시간 )**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:00~20:00 (공휴일포함)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

**제34조 ( 계약기간 )**
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. 계약 종료 1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 될 수 있다. 자동연장 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다.

**제35조 (계약자 의무)**
① '갑'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월 이용료 납부의무

2. 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

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
4. 기타 '을'과 협의한 규칙 이행

②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
2. 급여 제공시간에'갑'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'병'에게 통보

3.'갑'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'갑'또는'병'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

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
5. ‘갑’의 식사제공, 이용상담, 이용편익 제공

6. ‘갑’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

7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
8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
9. 기타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
③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
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
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‘을’에게 통보

4. ‘갑’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
5. 기타 ‘을’의 협조요청 이행

**제36조 (계약해지 요건)**
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2.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3.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‘갑’(또는‘병’)의 동의 없이 ‘을’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

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
2.‘갑’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3.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4.‘갑’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6.‘갑’이 월 4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**제37조 ( 미이용 비용산정 )**
①‘을’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‘갑’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(월~금요일)기준으로 한다.

**제38조(이용료 납부)**
① ‘을’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‘갑’또는 ‘병’에게 게 매월 8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
② ‘갑’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
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# 주간보호센터 상담 시 본인부담금 (2023년 기준)

## ○ 주간보호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

단위 : 원

| 구 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(주3회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간보호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| 재가급여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
## 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단위 : 원

| 구 분 | 장기요양 1등급 | 장기요양 2등급 | 장기요양 3등급 | 장기요양 4등급 | 장기요양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시간이상 ~ 6시간미만 | 38,630 | 35,760 | 33,010 | 31,510 | 30,000 | 30,000 |
| 6시간이상 ~ 8시간미만 | 51,780 | 47,960 | 44,270 | 42,770 | 41,240 | 41,240 |
| 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 | 64,400 | 59,660 | 55,080 | 53,580 | 52,050 | 52,050 |
| 10시간이상 ~12시간미만 | 70,950 | 65,720 | 60,720 | 59,190 | 57,690 | 52,050 |
| 13시간 초과 | 76,080 | 70,480 | 65,110 | 63,600 | 62,100 | 52,050 |
| 본인부담금(15%) | 9,660 | 8,949 | 8,262 | 8,037 | 7,808 | 7,808 |

## ○ 주간보호 8시간 이용 월 / 20일(주5일)이용시 본인부담금( 일반-15%일때 )

단위 : 원

| 등 급 | 급여비용 (1일) | 이용일수 (20일) | 급여비용계 | 본인부담금( 합계*15%) | 비급여 (점심+저녁+간식) | 본인부담금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64,400 | 20일 | 1,288,000 | 193,200 | 130,000 | 323,200 |
| 2등급 | 59,660 | 20일 | 1,193,200 | 178,980 | 130,000 | 308,980 |
| 3등급 | 55,080 | 20일 | 1,101,600 | 165,240 | 130,000 | 295,240 |
| 4등급 | 53,580 | 20일 | 1,071,600 | 160,740 | 130,000 | 290,740 |
| 5등급(등급외는 100%부담) | 52,050 | 20일 | 1,041,000 | 156,150 | 130,000 | 286,150 |

## ○ 주간보호 8시간 이용 / 월 24일(주6일)이용시 본인부담금( 일반-15%일때 )

단위 : 원

| 등 급 | 급여비용 (1일) | 이용일수 (26일) | 급여비용계 | 본인부담금( 합계*15%) | 비급여 (점심+저녁+간식) | 본인부담금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64,400 | 26일 | 1,674,400 | 251,160 | 156,000 | 407,160 |
| 2등급 | 59,660 | 26일 | 1,551,160 | 232,674 | 156,000 | 388,674 |
| 3등급 | 55,080 | 26일 | 1,432,080 | 214,812 | 156,000 | 370,812 |
| 4등급 | 53,580 | 26일 | 1,393,080 | 208,962 | 156,000 | 364,962 |
| 5등급(등급외는 100%부담) | 52,050 | 26일 | 1,353,300 | 202,995 | 156,000 | 358,995 |

★ 비급여(식재료비) 점심 3,500원 + 저녁 3,500원 간식 500원. / 1일 비용(점심+저녁+간식) : 7,500원

★ 한도 초과일은 100% 본인부담